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9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한민수 · 권칠승
추미애 · 임미애 · 이학영
박정현 · 김성희 · 문금주
이재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.9% 줄었고,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%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&D 투자, 인프라 구축,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%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(안 제55조).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내국법인의 경우(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)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7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원 초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2.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

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9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8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원 초과	626억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억원 초과 200억 원 이 하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9)
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	37억8천만원 + (2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1)
3천억 원 초 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
2.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
하는 내국법인의 경우

과세 표준	세율
200억 원 이 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9
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	38억원 + (2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 원 초 과	626억원 + (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
② (생 략)

2억원 초과 200억 원 이 하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
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	37억8천만원 + (2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1)
3천억 원 초 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5)

2.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
하는 내국법인의 경우

과세 표준	세율
200억 원 이 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9
200억 원 초 과 3천억 원 이 하	38억원 + (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 원 초 과	626억원 + (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② (현행과 같음)